

건설현장 불감증 아직도 '심각'

아직도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전국 769개소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를 4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4.8%인 729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위반 사항 중에선 추락·낙하·붕괴·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발 현장 중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개소는 형사입건 처리했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하는 등 총 2,560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결과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안전기술자료의 보급을 확대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공사장별 위반 건수는 평균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4.1건에 비해 0.6건(14.6%)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형 굴착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892명 참석)'를 개최하고, 전 건설업체에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등 사전 교육을 펼친 것이 다소의 효과를 냈다고 풀이했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개선될 듯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4월 20일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을 완화했다. 종전 '같은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된다.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즉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많아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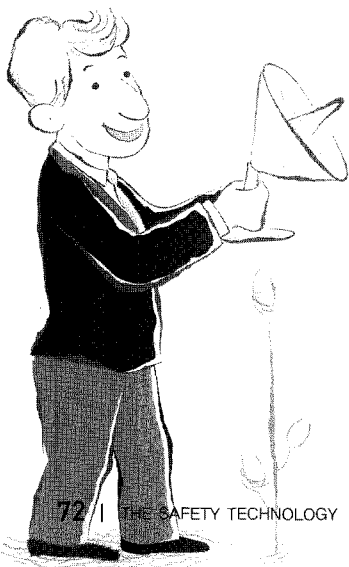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도 강화했다. 지정대상을 고시에서 노동부령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체심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체확인 실시자 자격 요건 개선 및 자체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주기를 6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단일화하고, 확인이 면제되어 있는 자율관리업체도 6개월에 한 번 자체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업체 중 대형업체의 경우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시 바로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도 정비됐다.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태풍·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등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영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업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들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금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정보 일반 공개

무상안전점검의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교량 등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이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또 무상안전점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된



다. 기존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던 무상 점검 범위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도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4대 강 등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16개)가 의무대상시설에 추가되며, 폐기물매립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연면적 3만㎡ 이상의 야구장 등 문화·집회시설과 5,000㎡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한 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실태 파악한다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하고, 건강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보호 방안 수립을 위해 전국 2,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공단 연구원은 외국인근로자의 △ 작업환경 및 작업상황 △ 업무상 사고 및 직업병 경험유무 △ 건강의료기관 이용실태 △ 안전보건교육 실태 등을 내용으로 5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약 13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별 언어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 면접원에 의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결과를 분석 및 신뢰성 검토 등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제도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무재해 사업장 교육 규제 완화 현실화

무재해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재해발생이 많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돼왔다"라며 "실질적인 교육과 함께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져 산재예방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하여 실시되던 전문화교육 및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이 앞으로는 민간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개정

안에 대해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 하기 운동' 시행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 하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크게 '사업장 금연운동'과 '근로자 마음의 건강 만들기 운동'으로 나뉘며, 근로자의 흡연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운동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노동부는 향후 5년내 근로자 흡연율을 현재 약54%에서 3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장 금연운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사업장'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금연대책 수립 매뉴얼을 사업장에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장에 금연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중점사항인 '근로자 마음의 건강 만들기 운동'은 최근 사업구조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마음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등 마음건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자가진단·평가도구·예방방법 등도 전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들이 '마음의 건강' 관리 대책을 마련하게끔 독려하고,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 심리상담지원 사업을 2011년 시범사업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선언' 지지 성명서 채택

안전보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헌장인 '서울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 25차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연차총회(APOSHO 25)에서 '서울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채택된 것. 이번 총회기간 중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선언 특별세션'에서 각국의 안전보건기관 대표자 25명이 서명한 '모리셔스 성명서'가 채택됐다.

'서울선언'은 사회 각 주체별 안전보건 실천의지를 담은 최초의 국제적 안전보건 헌장으로,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전세계 노사정 대표자 46명이 서명했다. 이번 '모리셔스 성명서'는 지난해 3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서 24개 안전보건 기관이 서명한 '카나리섬 성명서'와 같은해 6월 서울포럼에서 50개 기관이 서명한 '서울성명서', 11월에 독일에서 16개 기관이 서명한 '뒤셀도르프 성명서'에 이은 네 번째 성명서이다. (주)

